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15. 11.11(수) ~ 11.23(월) [13일간]

※ 제264회 정례회 : 2015. 11.10(화)~12.21(월) [42일간]

##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6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재생본부</li><li>○ 도시계획국</li><li>○ 주택건축국</li><li>○ 마곡사업추진단</li><li>○ 도시공간개선단</li><li>○ SH공사</li></ul>	없 음

####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김 미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위원</li> <li>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li> <li>전문위원 오 정 균</li> <li>○ 사무요원</li> <li>의사지원팀장 임 승 락</li> <li>시설6급 강 천 수</li> <li>행정6급 최 원 환</li> <li>입법조사관 임 경 숙</li> <li>입법조사관 최 정 희</li> <li>입법조사관 한 봉 수</li> <li>행정7급 강 택 기</li> <li>워드요원(2명) 염 경 미</li> <li style="padding-left: 20px;">정 희 숙</li> <li>○ 속기 및 녹취요원(2명)</li> </ul>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 정 태	
"	새누리당	강 구 덕	
위 원	새정치민주연합	김 기 대	
"	"	김 인 제	
"	"	김 희 걸	
"	"	박 준 희	
"	"	유 동 균	
"	"	유 찬 종	
"	"	이 승 로	
"	새누리당	남 재 경	
"	"	남 창 진	
"	"	우 미 경	

####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5. 11.11(수) 10:00 ~ 11.12(목) [2일간]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5. 11.13(금) 10:00 [1일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5. 11.16(월) 10:00 [1일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5. 11.17(화) 10:00 [1일간]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5. 11.18(수) 10:00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5. 11.18(수) 14:00	도시재생본부		
2015. 11.19(목) 10:00 ~ 11.20(금) [2일간]	SH공사	SH공사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5. 11.23(월)1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확인점검 기간
2015. 11.23(월)14: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
2015. 11.23(월)16:00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 6.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
도시재생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li> <li style="padding-left: 20px;">청취자료 확인</li> <li>○ 질의·답변</li> <li>○ 서류 또는 현장확인</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2014,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li> <li>○ 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li> <li>○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li> <li>○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li> <li>○ 창동상계지역 등 행복4구 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li> <li>○ 2013, 201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li> <li>○ 기타 도시재생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도시계획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li> <li style="padding-left: 20px;">청취자료 확인</li> <li>○ 질의·답변</li> <li>○ 서류 또는 현장확인</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2014,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li>○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li> <li>○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li> <li>○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li> <li>○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li> </ul>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 계획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li> <li>◦ 2013, 201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li> <li>◦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주택 건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li> <li>○ 질의·답변</li> <li>○ 서류 또는 현장확인</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2014, 2015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li> <li>◦ 주택정책의 개발·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li> <li>◦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li> <li>◦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li> <li>◦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li> <li>◦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li> <li>◦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li> <li>◦ 2013, 201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li> <li>◦ 기타 주택건축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마 곡 사 업 추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li> <li>○ 질의·답변</li> <li>○ 서류 또는 현장확인</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2014,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li>◦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마곡지구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li> <li>◦ 마곡지구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li> <li>◦ 마곡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li> <li>◦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li> <li>◦ 2013, 201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li> <li>◦ 기타 마곡사업추진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공간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li> <li>○질의·답변</li> <li>○서류 또는 현장확인</li> <li>○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li>◦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li> <li>◦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li> <li>◦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SH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li> <li>○질의·답변</li> <li>○서류 또는 현장확인</li> <li>○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2014,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li>◦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임대주택8만호 건설에 관한 사항</li> <li>◦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li> <li>◦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li> <li>◦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li> <li>◦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li> <li>◦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li> <li>◦ 임대주택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li> <li>◦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li> <li>◦ 2013, 201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li> <li>◦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 □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 I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87	220	34	133
도시재생본부	75	33	4	38
도시계획국	66	44	9	13
주택건축국	49	35	4	10
마곡사업추진단	28	18	2	8
도시공간개선단	59	33	6	20
S H 공 사	110	57	9	44

### II . 시정·처리 요구사항 ..... 220건

[도시재생본부] — 33건

1. 의회보고도 없이 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편의적 혹은 사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등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위원회 위원 위촉시 일부 전문가들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력화를 지양하고, 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 용역 의존도를 낮추고, 불가피할 때만 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며, 명목상 경쟁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선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용역 발주 관리를 엄정히 할 것
4.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5.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를 통합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소통 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6.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관이 주도하는 형국인데, 도시재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확보할 것
7. 한남뉴타운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시책 혹은 관련계획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체시키는 것은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8. 경의선 숲길 일대 등 공공투자가 이루어진 곳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공공투자 때문에 오히려 서민(세입자)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하여,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및 근거를 상세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드는 안건이 포함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보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것.
11. 돈의문 박물관 등 사업 시행시 주변의 교통문제 등을 도시재생본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뉴타운, 재개발 등 매몰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검증 절차 등에 문제는 없는지 재점검을 실시하고, 해제 지역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종료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면 지출된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13. 한전부지 공공기여 관련 강남구와의 갈등사항은 자치구와의 잘못된 선례로 행정력이 낭비되며, 시민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14.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당초 지상부에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키로 계획했으나, 공모 당선작은 건축물로 보이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 보이는데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5.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지하부에도 자연채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조합(추진위)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신청과 매몰 비용 신청 시 이에 대한 확인기능을 수립할 것.
17.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을 전자조달 구매를 통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공지토록 검토.
18.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가압류에 대한 갈등조정 노력과 좋은 사례들을 정리하여 시공사와 정비사업 추진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9. 강남구와의 갈등관계와 관련, 강남구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여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니 언론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잡을 것.
20.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미래먹거리, 브랜드, MICE의 아시아 확산 등 주요사업이므로 인력 보강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추진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
21. 직권해제 규정은 현장 상황과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과 해제를 구분할 지 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
22.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 관련 이축시 발생한 한옥자재를 보관 중이나, 한옥자재의 활용률이 저조하니 한옥자재 보관여부를 재검토 할 것.
23. 성곽마을 재생사업에서 주민요청사항 등을 감안, 중장기 사업 계획에 포함토록 용역수행자에게 작업지시 할 것.
24. 코디네이터 활동실적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디네

이더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25. 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 관련, 민간이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곤돌라사업을 시설 중복이라는 논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와의 상생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6. 도시재생 연구반 등 조직이 신설·변경될 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할 것.
27. 아라뱃길과 연계한 선착장 규모가 왜 700톤급 인지 정확한 근거를 검토할 것.
28.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는 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관리부서가 틀리다면 현실감 있게 문제가 통합되어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며, 유기적인 업무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9. 수행하는 용역이 많음에도 시스템화 되지 않아 일관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 체계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
30. 남현동 채석장부지 관련 채석장 활용 방안 마련 필요
31. 행복4구 플랜이 구청장, 시의원, 주민과 공유되도록 하고, 완료사업 검토하여 주민욕구 충족여부 등 사후 평가 할 것
32.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3. 코디네이터 중 조합이나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비대위와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도시계획국] — 44건

1.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재정비계획과 예산 집행계획 수립 등 2020년 자동 실효 대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 파악 및 소요예산 산출 및 확보, 서울시와 자치구간 비용분담 방법 설정 등으로 예산 미확보로 재정비 계획 수립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분양권/입주권 자료가 국토교통부 자료의 공개 건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에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만 참여하고 있는 바, 모든 구청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남녀 차별 요소가 없도록 하기 바람
6. 도시계획국 용역에 수의계약이 많은 바, 그 이유 파악 및 대책 마련하여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8. 내용상 타 조례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 다른 조례와 동시에 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미디어파사드 설치기준이 상업지역이면서 대로 25m 이상 도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장소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빔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10.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 지역구의 현안 사항(송파구 방이동 운동장) 반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11. 비오톱 등급 조정이 민원신청 561건 중 445건으로 79%나 되고 사유도 지적경계 불일치와 비오톱 유형변경이 많은데 민원발생 이전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사전 조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12. 비오톱 등급 조정시 445건 중 평가제외가 223건으로 50%에 달하는데 비오톱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수립할 것.
13.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4. 집행부가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15. 비오톱 관련하여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에서 동시에 법률 자문 구하도록 할 것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결정 심의과정에 도시계획국 참여 제도화 방안 마련 및 매수 기준 설정 필요
17. 비오톱 등급 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등급 관리의 정확성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8.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관련 민원 처리시 해당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메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19. 생태면적률 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지침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바람
20.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비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1.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기준 설정 및 배정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22. LED간판 개선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간판 개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 하기 바람
2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히 하여 철골 부식 등의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점검 항목에 옥외 광고시설물 점검 항목에 노후 상태 및 설치 후 경과년수 등을 포함하는 방법 검토하기 바람

24.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현재 빠져 있는 도심권 생활권 계획도 별도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25. 용산공원 산재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도권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람
26.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일반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하도록 할 것
27. 풍납토성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소재 규명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8. 시장이 바뀔에 따라 한강변 관리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일관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LED 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하기 바람
30. 금년 6월 22일 항공법의 개정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최고고도 지구의 높이 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항공학적 검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항공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31. 풍납동 결합개발 사업 인가가 불가함에도 조합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관할관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2. 25개 구청에 배포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구청에서 활용·시행되는지 확인하기 바람

33.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 보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신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하기 바람
34. 경관지구/고도지구 안의 재산권자가 겪는 불편요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5.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단 모집에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하여 대표성을 떨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중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단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 있음.
37.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파인트리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38. 도시계획국 발주 용역 사업에 대한 외부 자문시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 필요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외부 발주 용역의 경우 대부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강구 바람
39. 비오톱 등급 조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40. 소관 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심의시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회의 및 현장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42. 전문직들의 인사 이동 및 업무 배치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43. 생활권계획 수립 등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정책수립시 시민의 대표인 시나 구의원과의 협의 과정 거치기 바람
44.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 되면 장기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35건

1.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등 업무대행건축사들의 비리가 심각해 보이므로 건축사 징계 현황 및 업무대행 건축사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보완하기 바람
3. 임대/분양 혼합주택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입자 거주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영등포 쪽방촌 등 쪽방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여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고, 쪽방촌 주거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재난위험시설의 거주민 이주대책 등 동절기에 대비하여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6. 공개공지 DB 구축과 더불어, 공개공지 위법행위 근절에 강력한 수단을 도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7.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의 주거 문제에 정책적으로 보다 집중하기 바람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자료 작성성이 매우 부실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9. 국가 한옥자재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한옥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적지 않은 유지관리비 지출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지향하기 바람,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함
10.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가 9월 현재 2만세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관리비 장기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사회적 혼합단지의 갈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재난위험시설 E급인 정릉 스카이라파트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조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서울시와 SH가 추진하는 리츠사업에 대해 주민반대가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창신동 등 시유지활용 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민간임대 공급계획이 4,500호였는데 현재까지 980호밖에 공급이 안 되어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철거예정 주택을 매매한 후 특별입주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7. SH공사 임대주택 임차인대표 미구성 비율이 45%에 달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많은 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입주대기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19. 내곡 아우디정비사업소 이전과 관련 사업자 입장에선 서울시 행정의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마곡사업추진단과 주택건축국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긴밀하게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20.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시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졌는데, 향후에는 신속하게 구성하기 바람
21. 한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한옥지구 지정 전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바람
22. 한옥지원을 위한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통보만 하지 말고,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3. 수서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강남구를 비롯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급차량 보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등 관리에 미비점이 있는데 개선하기 바람
25. 동대문아파트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 주민민원이 심각한데, 수도관 안전을 위해 주택건축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26. 무허가 건축물의 80%가 위법건축물인데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특정 인사들이 여러 위원

회에 중복해서 속해 있고, 참석횟수도 적으므로 이러한 자문  
위원은 정리하기 바람

28. 서울리츠로 짓게 되는 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  
상으로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도시외곽  
등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장소에 공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으므로 보완 바람
29. 공공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은 법규 개정보다 용이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30. 경복궁 서측 환경정비사업 추진시 주민행정규제사항은 세밀하  
게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31.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 및 상담실적이 저조한데 임대  
보증금 대출한도를 전세가격 수준만큼 인상해 주고, 금리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바람
32. 임대주택 공급 관련 공약 달성을 위한 공급이 아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33.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는 지역주민 반대에 의한 것인데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NIMBY현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4. 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타 위원회 중복 많고, 참석실적이 저  
조한 위원은 해촉 및 재선정하기 바람
35. 주거복지센터의 수탁사무 이행 부적정이나 관계법령 미준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마곡사업추진단] — 18건

1. LG아트센터 공공기여 관련 기부채납 계획단계에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서울시-LG간 합의서는 무효  
이므로 확인 후 조치 요망

2. 마곡중앙공원이 LG공원으로 불리거나 사적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3.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저조한데, 임대건물, 수의계약, 제조시설 허용 등 외국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법률상 근거가 없는 마곡조성자문단의 마곡지구 건축계획 사전자문으로 기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적 책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5. 마곡조성자문단의 MA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임자의 추천으로 후임자가 위촉되었는데, MA 등 전문가 위촉에서 보다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
6.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일본기업 홍보마케팅 계약 체결 이후 일본기업 유치 등 성과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 2013년 중국기업과 프랑스 기관들과 MOU 체결 이후 추진된 내용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8. 공공산업지원시설과 글로벌 R&D센터와 관련하여 분양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상암DMC사례와 같이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9. 마곡사업추진단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0. MICE산업은 가동률이 90%에 달해 서남권의 좋은 도시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바람
11.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입주포기에 따라, 마곡지구에 미칠 파

급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2. 마곡 국제컨퍼런스가 단순 홍보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개최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3. 마곡지구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마곡지구 전체 발전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갖는 권한대로 조성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 용지분양에서 또 다시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SH공사와 보다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14. 마곡 지원시설용지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만큼 주민과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바람
15. 산업단지 미매각용지가 전략적 유보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16. 마곡 중앙로 개통에 따른 공사차량 등에 대한 안전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7. 마곡지구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마곡사업추진단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업무 수행의 열정과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더욱 분발할 것
18.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32건

1. 서울총괄건축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외국출장을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서울총괄건축가 지원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이 일정을 제대로 관리·사전 조율하지 못한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의 공간을 개선하고 건축문화 확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자주 출석하여 의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책 교류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프로젝트 수행자 선발 시 참여대상자와 심사자가 모두 공공건축가인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우려되므로 공정한 심사가 의심되므로 심의절차를 투명화하여 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서울총괄건축가는 위촉 이후 현재까지 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우리위원회에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 한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건축기본조례상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치 요망
5. 도시공간개선단 출범 이후 용역 15건 중 12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공정한 기회 보장 및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 설계용역 방식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할 것
6. 공공건축의 연임규정 정비 필요 및 공공건축가의 신진, 중진, MP 등으로의 구분에 실효성이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자 선발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7.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가 서울시의 비우는 광장 정책과 상반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검토되도록 하기 바람

8. 설계공모기준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9.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실무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14명인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검토하기 바람
10.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기 바람
1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안전심의와 관련하여 같은 안전을 8년간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것은 안전의 대시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서,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한 바, 이는 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무시한 일종의 횡포이며, 위원회가 권력기관화 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시 투입 예산의 효과 극대화 및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추후 보고 바람
13. 2007년부터 매년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표준형 디자인의 적용실적이 부진하므로 그 이유 파악 및 대책 강구 필요
14. 시민디자인 공모전과 표준형디자인 설계공모 예산집행이 부진한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람
15.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문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건축기본계획과 디자인기본계획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7. 공공발주제도 개선시 현상공모 표준지침 작성과 건축전용사이트 구축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통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기 바람
1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9. 건축정책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당연직 서울시 간부 및 위촉직 전문가의 참여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 공공건축가 출범 이후 공공건축가에게 자문, 심의, 수의계약 등이 집중, 독점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바람
21. 공공건축가 현상설계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심사과정 투명화 장치 마련 필요
22. 도시개선단장으로서 명확한 업무과약을 통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조직 수장으로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과 역할 필요
23. 시민공모전 수상작품 제작 사업의 필요성 및 제작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24. 총괄건축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자문이 곧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상 부담 및 지시로 인식되므로, 총괄건축가는 자문의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25. 서울총괄건축가가 공공개발센터 등 관련 부서로부터 각종 업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건축기본조례에서 정한 총괄건축가 업무범

위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6. 현상설계공모 결과에 대해 세간의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상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7. 공공건축가가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자문으로 참여하여 자문비를 받는 것에 대해 재검토 바람
28. 일부 공공건축가가 용역에 중복 참여하거나, 공공건축가들끼리 입찰하고 그 입찰을 평가하는 등의 양상은 공공건축가의 또다른 끼리끼리 문화 양산 및 이익집단화 우려가 있고, 근본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29. 건축정책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0.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비전계획수립 등 업무를 하게 됨에 따른 각 부서별 외부 용역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요망
31. 기획업무나 용역 발주시 외부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 있음.
32. 건축학교 운영의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서울의 도시공간개선의 방향 등 미래지향적 사업과 정책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및 인력 배치 등을 재조정하여 내년부터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33.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명확화 필요

[SH공사] — 57건

1. 전기 분야 하도급에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2. 임직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공사 관련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근거 마련으로 퇴직 임직원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등의 행사로 공사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바람
3.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통합발주 등 제도보완 필요
4. 자체 계약심사 관련 대상공사 금액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바람
5.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목소리를 공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6. 중요한 연구용역을 발주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용역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보다 용역수준 향상을 위해 배점기준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7. 주거복지 상담사가 임대주택 입주자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장기전세주택 브로커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사 홈페이지 팻업창을 통해 불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에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람
9. 노조위원장 등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불법하도급 및 외부업체와의 골프 향응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기 바람

10. SH공사의 부채는 임대보증금 등 필수적인 부채인데, 서울시 부채감축목표에 치중하다 보면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사의 적절한 정책적, 경영적 판단이 필요함
11. 임대주택 화재안전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2. 설계변경은 현장사정 반영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내곡지구 아우디 관련 대체부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14.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저소득층 금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계층을 늘리기 바람
15. 다가구매입심의위원회, 품질점검위원회 위원선정시 특정 건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16. 마곡지구 자전거도로포장에 자치구청이 요청한 특정 외국 제품이 사용되었는데, 유지비용이 국산제품보다 많이 들고, 특혜성의혹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특정 제품사용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람
17.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외제차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 사항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노후 아파트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마곡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간평가 및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PA에 공사 사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은 서울시 및 공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20. 아파트 관리나 맞춤형 주택 공급 미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 관리체계가 부실한 데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21. 임대아파트 화재감지기 점검시 육안으로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22. 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의 난방비가 “0”원인 사유가 입주자 장기 부재, 계량기 결함, 부재 미확인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관리가 부실하고, 커뮤니티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특히, 난방을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난방비가 “0”원 나온 세대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23. 특정 배선업체가 수주를 독식한 경위에 대해 내부 압력 등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수주내용, 공사비 지출내역, 자재납품업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다가구 원룸 매입 신청시 토지거래매매계약서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
25. 부가세 면세기준 적용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6. 주택위탁관리업 참여는 방만 경영으로 실익이 없고,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참여여부를 재고하기 바람

27. 중간소득층 포함 서민 중심인 공사의 임대주택 정책목표를 주거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28. 이번 골프 접대 사건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조직문화, 특히, 기전에 관련된 도급체제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기 바람
29. 작은 도서관을 주민자치로 운영하기에는 비용 및 수요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립비용을 모아 규모가 큰 도서관을 건립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형태로의 전환 가능 여부 등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강구 바람.
30. 많은 임대단지 내 미운영 복지시설의 활용방안 등 제도적 개선 사항 마련 필요
31. 임대주택 입주 관련 민원이 증가와 관련하여 유형별 민원 원인 및 감소 대책 강구 바람.
32.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초과 입주자들의 경우, 무조건 퇴거조치 보다는 소명기회를 주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3. 임대료 체납율이 높은데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 바람
34.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복리후생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바람
35.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초과자 퇴거법령에 대하여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입주자가 없도록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교육하기 바람
36. 돈의문 박물관 마을 추진시 교통대책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37. 건설, 토목, 전기 분야 등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고, 업무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윤리강령 혁신이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 있음
38. 공사 내부 감사에 대해 사장의 공식적 의견 제시 및 견제 장치 등 제도적 보완 필요
39. 20년 이상된 임대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 철저히 하고,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 산재되어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40. 아파트 시공업체 중 하자발생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바람
41. 가든파이버 톨동 일괄공급 및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일괄 임대 추진으로 인한 기존 상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바람
42. 2014년도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43. 택지조성사업지구 중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청에 인수인계 처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바람
44. 가든파이버 상가 활성화 등으로 총사업비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5.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바람
46.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2013년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성과급 지급 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기 바람.
47.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 등 다각적 검토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바람
48. 서울시의 SH공사 임대주택 건설재원 지원금 중 미전입분에 대해 당초 약속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 강구 바람

49. 보상실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및 시행,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바람
50. 임대주택 수탁관리체제로 전환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 법적 가능성 여부 검토 필요
51. 맞춤형 임대주택에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만큼 재생전략 등으로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바람
52.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특정회사 대표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임명시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53. 자체 계약 심의 대상을 서울시 심사로 강화하는 방법 검토 바람
54. 노조위원장 골프 접대 폭로의 근본적 이유는 발주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불이익받거나 수주받지 못한 업체들의 불만 및 반발, 발주 및 하도급 체계의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총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5.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협의회 미구성 사유 파악 및 대책 강구 바람
56. 설계변경의 원인 규명 및 설계변경 최소화 등을 위해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의 강화 방안 검토 바람
57.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 바람

### Ⅲ . 건의사항 ..... 34건

#### [도시재생본부] — 4건

1. 행정사무감사시 책자 제작으로 제출기한이 지연되니, 우선 의원 메일로 파일을 제출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방법을 개선할 것
2. 한강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 서울 활성화를 위해 선착장 규모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검토할 것.
3. 국제복합지구, 구룡마을, 구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문제 등이 강남구의 일방적인 보도에 서울시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관계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으니 서울시의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잘못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정정조치를 할 것.
4. 용역 수행업체 및 연구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니,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수한 용역업체의 발굴 육성에 노력 할 것.

#### [도시계획국] — 9건

1.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조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2. 위원회 위원 자문시 속기록 공개 및 심의 기간의 단축 방안 검토 필요
3. 자치구 보조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인센티브에 따른 점수 기준 보다는 소외·낙후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자치구별 균형 잡힌 예산 집행되도록 할 것

4.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 집중점검회의(TF 등) 구성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용도지구 정비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5. 한 위원의 과도한 위원회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및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 위촉, 인맥, 학맥 위주 선정 지양, 위원의 소신 심의 보장 등 위원회의 전반적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자치구청장에게 한정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현실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7. 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으로 100억을 부과하였는데 과도한 부과는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람
8. 지역현안 관련 TF팀 등 구성시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현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기 바람
9. 자연경관지구가 많은 종로, 중구, 성북 3개구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지구 완화조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검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4건

1.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포털을 특화시켜 청년대상 전월세 주택공급 서비스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청년층에 임대주택공급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청년주거문제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

공인중개사 제도 실행을 검토하기 바람

3. 한옥에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옥밀집 지구 거주 인구, 연령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4. 법에 의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부족한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마곡사업추진단] — 2건

1. 마곡의 글로벌 브랜드 강화가 필요한데, 시민방식이 아닌 전문가 그룹, 해외채널을 등을 활용하기 바람
2. 마곡지구는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에 있어 하수시스템이 물재생센터로 이어져 완전한 물순환도시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물순환도시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도시공간개선단] — 6건

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개최시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2. 대중교통 안전디자인, 표준형디자인,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인데 통합할 수 있게 검토 바람
3. 표준형디자인과 인증제품이 잘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
4. 2016년도 동주민센터 사업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최상위 사업에 속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시 소관 위원

회 및 의원이 운영조직 구성, 예산편성 등 기본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에 적극 노력 검토

## 6. 클래식콘서트홀 설계공모 관련 업무 추진시 상의 요망

### [SH공사] — 9건

1. 징계수위 결정 등에 대해 사장 권한의 강화 필요하고, 인사(징계)위원회에 시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
2. 감사 ombudsman의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ombudsman 위원추천에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
3.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가능하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
4. 직종별 1급 처장 직위는 반드시 해당 직렬 출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폭 넓은 인재풀로 조직을 구성해 주기 바람
5. 서울시 683개 정비구역 중 36%인 240여구역이 해제된 심각한 난개발 상황에서 시급히 SH공사형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할 필요 있음
6.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입주민의 입장에서 검토 바람
7. 장지역 역명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람
8. 전기통신 분야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9. 다가구 등 매입심사위원회 구성 등 총괄 재검토해 주기 바람

#### IV. 기 타(자료제출 등) ..... 133건

[도시재생본부] — 38건

1.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현황 및 소송 판결문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회의록(1개월만)
3. 노들섬 관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모든 예산 세부항목 작성 제출
4.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용역시행계획, 계약서, 예산집행 내역
5.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총괄계획가 위촉방침
6.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총괄코디네이터 위촉방침
7.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결과  
(15.9.21)
8.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실무검토회의 자료
9. 성동구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10. 세운상가 관련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근거 및 지침
11. 세운상가 관련 공공공간 설계 기간 단축(6개월→3개월)을 위한 TF팀 관련 내용
12. 백사마을 예산관련 상세자료 제출
13. 2015년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지원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 내용
14.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구역 소요예산 현황(세대수 포함)
15. 일반정비와 수복형 정비 차이 구분, 수복형정비사업 진행사항 별도자료 제출
16.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17.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특성관리지역 전신주 지중화
18.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역사도심부 순환버스 도입

19.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백운동천 등 옛 길의 지속적 회복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 보고 요구
20. 연구반 운영계획서 방침서 제출
21. 협업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 방침서 제출
22.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방침서 제출
23. 코디네이터 운영관련 선정기준, 역할, 평가기준, 교육내용 등 운영 전반사항
24. 2016 예산안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예산 사업명, 소관부서 기입 제출
25.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운영계획서
26. 도시재생전략계획 책자
27. 도시재생본부 5급이상 간부 학위 취득현황
28. 한남뉴타운 관련 기투입된 시 및 구 예산
29. 한남뉴타운 관련 기투입된 민간자본 규모
30. 한남뉴타운 관련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대책
31. 한남뉴타운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시·구·조합 협의 일지
32. 한남뉴타운 관련 한남뉴타운 구역별 주요 쟁점 사항
33. 한남뉴타운 관련 관련 높이계획 및 서울시 대책
34. 코디네이터, 갈등조정관, 현장지원센터 개인별 수당 지급내역
35. 강서구 정비사업 융자금 대출현황
36. 도시재생정책연구반 범류자문서 제출
37. 위원회별 전문가 위촉기준
38. 동북4구 기존 사업외 신규 검토중인 과제 제출

[도시계획국] — 13건

1. 사무관 이상 석박사 지도교수, 논문명 자료
2. 6개 위원회 및 자문단 참여교수들 참여위원회, 인적사항 등 제출
3. 한강변기본계획, 종합관리계획 PT자료 요청

4. 조선총독부령에 기록(고시)된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평가 검토, 잔존처리 등 정리 자료
5. 도시계획국 위원회 관련 6개 조례 제출요청
6. 빗공해실태조사 완료된 50개소 구체적인 자료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T/F(10개부서) 자료
8.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자료(27개지구)
9.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자료
10.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관련 사업 자치구 자료
11. 정비구역해제지역 토지거래현황
12.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근거 법령
13. 옥외광고물 최근 3년간 적출건수

#### [주택건축국] — 10건

1. 주거복지실태조사,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최적관리방안), 공공 임대 공급계획 용역 관련 자료
2. 건축인허가 및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자료
  - 2012년 8월 이후 서울시 각종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서 건축 인허가 현황자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일부개정예 따른 세입(부과금) 관련 증·감 및 관련 대책
3. 영등포 쪽방촌 평균 임대료 자료
4. 주택건축국 사무관급 이상의 석박사 논문제목 · 지도교수 · 학교 정보와 주택건축국 소관 위원회와의 관계
5.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관련
  - 업무대행건축사 위촉 · 연임 및 행정처분 현황
  - 대규모 건축사비리적발 관련 자료

- 건축사장계위원회 구성, 위원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 6. 한옥관련(서촌임대주택 공사자료, 한옥밀집지역 필지별 건축연도 현황, 경복궁 서측 초등학생 수)
- 7. 계약관련(중복계약 업체 관련 자료 일체)
- 8. 주택건축국 소속 직원의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 9.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권역별대표의 간담회 자료, 각 모니터링단이 수합한 내용, 부동산114와의 협약서
- 10. 주거복지지원센터 전년도 지적사항의 미개선부분, 보조금집행 부적정 사례, 사업부적정 건수에 대한 상세내용 및 센터별 예산집행 내역 중 인건비 자료

[마곡사업추진단] — 8건

1. 마곡 국제컨퍼런스 개최 결과보고서(2013, 2015년)
2. LG아트센터 관련 서울시-LG 합의서
3. 한국기술벤처재단 일본현지 홍보마케팅 용역 집행금액·내역
4. 마곡 관련 MOU 체결 참석자 및 내용과 이후 진행사항
5. 외국 식물원 운영비용 충당방법, 마곡중앙공원 운영비 추산액 및 조달계획
6. ○○○ 교수 프로필과 마곡사업 관련 활동내역
7. SH공사 수의계약 가능용지 현황 위치도
8. 세빌스코리아 용역 관련 자료 일체

[도시공간개선단] — 20건

1. 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세칙
2. LG아트센터 관련 서울시-LG 합의서

3. 한국기술벤처재단 일본현지 홍보마케팅 용역 집행금액·내역
4. 업무보고에 설계공모 및 설계기준안 관련된 자료
5. 세운상가, 서울역고가 국제설계공모 관련 건축정책위원회 미상정 사유
6. 건축정책위원회 2014년 제7차 상정안건인 국제설계공모 관련규정 검토 및 논의사항
7. 건축정책위원회 2014년 제11차 상정안건인 주거지재생분야 건축정책 T/F팀 구성제안 활동경과 및 향후계획
8. 건축정책위원회 2015년 제4차 상정안건인 서울시 도심프로젝트사업과 매장문화재 보전방안 논의 안건자료
9.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1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길 연계지역 건축화방안 기술용역과 관련한 추진사항
11. 총괄건축가 자문의견 상세내역
12. 서울건축프리비엔날레 예산집행현황(세부내역 포함)
13.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심포지엄 진행 자료(발제내용 포함)
14.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3년간 1,2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연도별 출석현황
15.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상정된 응봉교 방음벽 안전관련 부결건 상정이유 및 회의록, 참석자 명단, 부결내용
16. 지난 3년간 공공건축가 수의계약 현황
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계비(800만원) 내역서
18. 표준형디자인 확산과 관련한 적용방안 및 타부서(기관)와의 협의계획
19. 시민공모전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

## 20. 제척사유 있는 공공건축가 위촉시기 및 행정처분 시기

### [SH공사] — 44건

1. 마곡용역발주시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등 참가여부(○○○교수) 자문비 지급시(용역비인지 공사 예산인지)
2. 주거급여 관련 워크샵 자료
3. 채널A에 나온 업체와 인천지법에서 판결한 조명업체가 동일한지 확인 요망, 2014년 이후 하도급 내역
4. 2009년 노조 위원장 해임과 관련된 인사자료 제출
5. 2015년 복리후생부분내역(일반직6급/특정직7급갑,9급갑 비교자료)
6. 2016년 복리후생비부분 예산내역
7. 복리후생비 관련 공사사규 규정사본(일반직, 특정직 부분별)
8. 제일전기, 태형EMC 서울대리점 현황
9. 태형(제일전기), 진흥전기 : 회사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등록일체 서류
10. 공사 배선기구 3년치 추가요청 (합계 5년치) 공사계약금액, 업체명, 납품계약금액
11. 1촌 나눔 하우스 하도급명부 등록 일체 서류, 공사질적 금액 (최근5년간) 사회적 기업
12. 향동 보금자리주택 조성관련 방음벽 시공업체, 금액 공고문 관련 서류 일체
13. SH공사 청렴옴부즈만 운영 현황
14.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교육현황(3년간)
15. 지구별 인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유지관리청 공사준공일, 미인계 사유, 향후계획

16.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관련 용역 자료(낙찰자, 입찰참가 사업자 제안서 사본)
17. 노조 성명서
18. 현대백화점 입점 사업계획서 및 임대료 산정 근거
19. 엔터식스와 현대백화점 입점 손익 분석 자료
20. 노동조합 회칙,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자료
21.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관련 일반현황
22. 최근 5년간 노동조합회비 중 활동비 내역, 공사에서 노조에 지원 하는 예산 내역(미제출시 근거 자료 요구)
23. 공사 총직원수, 징계직원 수, 비율(2014, 2015년)
24. SH공사 각종 위원회 현황
25. 매입주택 품질관리위원회(34명) 명단
26. 리츠 수익률(5%)확보 방안 조사자료
27.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조치 내역 및 환수 내역 관련소송 건 진행 상황
28.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허위 용역 계약서 관련 내용 및 석면용역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금 환수 내역
29. 돈의문 박물관마을조성사업 관련 7월 28일 설계용역계약체결 내용
30. 돈의문 기반시설 조성대행계약 체결내용
31. SH공사 발주용역중(5천만원 이상) PAC사업자문단 유지된 것 (최근 5년간) - 위원별 자문일, 자문료, 위원 위촉일, 회의록 원본대조필
32.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공사에서 발표했던 모집공고 조건 유지여부
33. 부실설계 징계 강화안 자료
34. 주거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4개단 예산집행 현황, 조직도

- 35.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관련 23개 단지 작은도서관 사업대상지구 및 사업계획
- 36. 모든 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최근 2년간 월별 공실률
- 37. 부실 설계용역 관련 제제 현황
- 38.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현황(지속과업 등)
- 39. 마곡 산업단지 업종배치방안 연구용역 계약업체(한국공간,환경학회)계약서류, 입찰, 참여업체 4곳 중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선정된 근거서류 일체
- 4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성명 포함) 및 ○○○, ○○○, ○○○, ○○○, ○○○의 프로필, 경력 및 연구사항 포함
- 41.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용역 관련 자문위원 프로필(공사제출 원본) 및 연구수행업체 연구진 프로필
- 42. 시립대 산학협력단 자문료 내역(○○○ 등)
- 43. 자문위원 ○○○, ○○○, ○○○ 위원 자문료와 입금일
- 44. 리츠 수익률(현금흐름) 분석 자료

##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2. 특기 사항

- 11.18(수) 증인 출석한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감사장

소란 난동행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조사 및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

- 11.18(수), 11.23(월)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강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구

가. 신연희 강남구청장

1) 부과금액 : 500만원

2) 부과사유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개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면담’,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 바자회 성금 전달식’ 이유로 불출석

나.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1) 부과금액 : 500만원

2) 부과사유 : 감사 시작시간 이후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다.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1) 부과금액 : 500만원

2) 부과사유 : 불출석 통보 당일 계획한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

- 강남구청장의 갈등유발 행정행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 주택건축국 소관 한옥자재창고 관련 사업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

□ 중요근거 서류 : 없음